

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0. 5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식량정책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시장격리 물량 기준, 미곡 재배면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「양곡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91호, 2020. 1. 29. 공포, 2020. 7. 30. 시행) 됨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생산량 규모, 단경기·수확기 가격,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,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격리 시 매입 물량 기준 규정(안 제16조)

- 미곡 매입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의 규모, 단경기(7~9월) 및 수확기(10~12월) 가격 수준, 민간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

나. 미곡 재배면적 관리 시 협의 절차 규정(안 제16조2)

- 조정 재배면적, 이행점검,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

3. 추진일정

- 1) 제·개정안 확정 : '20년 5월
- 2) 관계부처협의 : '20년 5월
- 3) 입법예고 : '20년 5월
- 4) 규제심사 : '20년 5월
- 5) 법제처 제출 : '20년 6월
- 6) 공포 : '20년 7월

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16조의 법 제16조제1항 전단”을 “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.

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가격은 통계청장이 조사한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한다.

1.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

2. 단경기(7~9월) 및 수확기(10~12월)의 미곡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

3. 민간 재고의 과다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

4. 그 밖에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곡의 매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)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조정 재배면적

2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

3. 그 밖에 미곡 재배면적 관리를 위하여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)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	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)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가격은 통계청장이 조사한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한다. 1. <u>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</u> 2. <u>단경기(7~9월) 및 수확기(10~12월)의 미곡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</u> 3. <u>민간 재고의 과다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</u> 4. <u>그 밖에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u>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곡의 매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16조의2(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)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조정 재배면적

2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

3. 그 밖에 미곡 재배면적 관리를 위하여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